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
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(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43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청소년들의 도박, 인터넷,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,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·정서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

- 라. 예방교육과 홍보 및 전문가 등 자문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및 제10조)
- 바. 비밀준수 의무(안 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전으로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 - 안 제3조에서는 ‘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, 중독 피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’라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.

-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6조에서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·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·시행,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 -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.
 -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었고,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하여 알코올, 마약, 인터넷,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.
 -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통신기기의 발달과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근이 자유롭고, 이로 인해 장소에 제한 없이 도박 등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.

- 알코올, 마약, 도박 등을 청소년 시기에 접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중독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 및 치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바,
-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중독 청소년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의 치료 지원도 규정함으로써 중독 치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13.] [법률 제19464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·유아, 아동, 청소년, 중·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(이하 “생애주기”라 한다)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, 우울·불안·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. 2.> [시행일: 2024. 7. 3.]

청소년 기본법

[시행 2024. 3. 26.] [법률 제20420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